

#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. 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24302호) 개정  
에 따라 신설된 보건진료직렬(보건진료소)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 
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 
설치된 기구(서울사무소)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 
지급을 위하여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에 위 두  
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'11.12.16 이전까지 「보건진료소 운  
영 규정」(보건복지부훈령)에 따라 지급하던 활동장려금(월20  
만원)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오던 의료업무수당(월5만원)  
수준을 감안하여 월25만원 지급액 산정(안 제2조)

※ 동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

나.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월30만원 지급 (안 제4조 신설)

중전의 영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,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지급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2013년 2회추경 예산에 45백만원 반영예정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13. 4. 9. ~ 2013. 4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##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”를 “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[별표 9]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 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”으로, “다음 각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의사 :[별표 1]”를 “의사: 별표 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2의 지급구분표

3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: 월 25만원

제3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.

제3조 후단 중 “지급액은[별표 3]”를 “지급액은 별표 3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직급보조비 가산금)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. 다만,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**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**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병 지	월 1,091,000원	월 1,010,000원

※ 비고 : 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·치과 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※ 급지의 구분

- 병지 : 영월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군 (9개군)

[별표 2]

**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**

근무년수별 / 등급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※ 비고 : 1.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.

2. 등급(가, 나) 구분 :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제3조 별표 1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수당규정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</u>에서 <u>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</u>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<u>영[별표 9]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별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일반직공무원인 <u>의사</u> : [별표 1]의 지급구분표</p> <p>2. 전임전문직공무원인 <u>의사</u> : [별표 2]의 지급구분표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<u>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<u>지방공무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-----</p> <p>----- 다</p> <p>음과 ----.</p> <p>1. ----- 의사: 별표 1-----</p> <p>2.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: 별표 2의 지급구분표</p> <p>3. 보건진료직렬 공무원: 월 25만원</p>

제3조(장려수당) 영[별표 9]의 라  
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 
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처리 업  
무,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  
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 
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 
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  
급액은[별표 3]과 같다.

<신 설>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 9의 제7  
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·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지  
급액은 별표 3-----.

제4조(직급보조비 가산금) 영 별  
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  
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
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  
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 
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  
만원 지급한다. 다만, 위 기구  
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 
경우는 제외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평창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(안)에 의거 신설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발생
- 산출기초 : 250천원 × 15명 × 12월 = 45,000천원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210

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[일부개정 2013.01.09 대통령령 제7849호]

제14조(특수업무수당)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(연구직 공무원은 별표 9의 제3호 및 제7호의 수당에 한정한다)을 지급한다.

[별표 9] <개정 2013.1.9.>

###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(제14조관련)

수당명	지급대상	지급액 및 지급방법
2. 의료 업무 등의 수당	가. 의무·약무·간호직·보건진료직 공무원 (4급 이상의 경우 의무·약무·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,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 및 「약사 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 에 승선·근무하는 공무원	·의무직렬공무원, <u>보건진료직렬공무원</u>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: <u>안전행정부</u> <u>장관</u> 또는 <u>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</u> <u>인을 받아</u> 해당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</u> <u>로 정하는 금액</u> ·약무직렬공무원: 월 70,000원 ·간호직렬공무원: 월 50,000원

[별표 14] <개정 2013.1.9>

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(제18조의6 관련)

비고

1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.
2.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  - 가.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: 월 300,000원
  - 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
    - 4급·5급(상당직 포함) 공무원 : 월 200,000원
    - 6급 이하(상당직 포함) 공무원 : 월 100,000원
    - 기능직공무원: 월 50,000원
3.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(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)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,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4.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